

# 排出賦課金制度(IV)

鄭國鉉  
(環境庁振興協力課長)

## 4. 賦課金算定方法 및 基準

排出賦課金算定公式은 “汚染物質 1kg當賦課金額×排出許容基準超過汚染物質排出量×排出許容基準超過率別賦課係數×地域別賦課係數×年度別賦課金算定指數”이다.

위의 算定公式에서 地域別賦課係數는 大氣 및 惡臭汚染物質일 경우, 排出業所가 I 地域에 所在할 때 그 賦課係數는 2이며 II 地域일 때에는 1, III 地域일 때에는 1.5이다.

여기서 I 地域이라함은 國土利用管理法 第 6 條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都市計劃法 第 17 條의 규정에 의한 住居地域 및 商業地域을 말하며, II 地域이란 國土utilization management法 第 6 條의 규정에 의한 工業地域, 水產資源保全地域, 開發促進地域, 留保地域과 都市計劃法 第 17 條의 규정에 의한 工業地域을 말하며 III 地域이란 國土utilization management法 第 6 條의 규정에 의한 耕地地域, 山林保全地域, 自然環境保全地域, 觀光休養地域, 都市計劃法 第 17 條의 규정에 의한 綠地地域을 말한다.

水質汚染物質일 경우 3 가지 지역 즉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다” 및 “특례”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지역지정은 排出許容基準(廢水) 適用을 위하여 環境廳長이 지정하며 地域別賦課係數는 “청정” 및 “가”지역이 2, “나”지역이 1.5, “다” 및 “특례”지역이 1이나 “다” 및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現在 없는 실정이다.

環境廳에서는 1983年 9月 7日에 全國의 邑, 面, 洞을 單位로 하여 “청정” 지역, “가”지역, “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청정”지역이란 水質을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環境廳長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가”지역이란 環境基準(水質) I 等級 정도(B.O.D : 1 이하)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 “나”지역이란 環境基準 II 等級(B.O.D : 3 이하) 또는 III 等級(B.O.D : 6 이하) 정도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 “다”지역이란 環境基準 IV 等級(B.O.D : 8 이하) 정도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 “특례”지역이란 環境基準 V 等級(B.O.D : 10 이하) 정도로 水質을 保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水域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각各 環境廳長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廢水의 경우 排出許容基準은 地域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바, B.O.D 및 부유물질의 경우 “청정”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은 50 이하이며 “가”지역에서는 100 이하, “나”지역에서는 150 이하, “다”지역에서는 200 이하, “특례”지역에서는 300 이하이다.

따라서 같은 농도의 汚染物質을 배출할 경우에도 그 지역에 따라 賦課金額이 크게 달라진다. 즉 “청정”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는 “나”지역에 위치한 業所에 비해 3倍 이상의 賦課金을 부담하게 된다.

끌으로 惡臭濃度別賦課係數는 惡臭濃度가 3 이상 4 미만일 경우 1이고 4 이상 5 미만일 경우 1.25이며 5 이상일 경우 1.5이다.

惡臭는 官能法에 의해 測定하는바 이 시험법은 惡臭가 발생하는 현장(공장)의 부지경계선상(피해지점)에서 건강한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惡臭의 취기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賦課金算定方法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부과금 산정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산정착오로 잘못 계산할 수도 있다. 부과금 부과대상업소에서도 산정 공식을 알아두면 賦課金額을 算定하여 볼 수 있다. \*

# 會員入會案內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依據設立된 本協會는 定款의 定한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會員入會를 권장하오니 아직도 參與하지 않고있는 방지시설업체 또는 배출업체는 빠짐없이 자신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會員의 資格

- 가. 環境管理技師會員 : 国家技術資格을 취득한 環境管理技師 1, 2 級 資格証所持者.
- 나. 排出業体会員 : 環境保全法 第15条의 規定에 依規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은者.
- 다. 防止施設業會員 : 環境保全法 第47条의 規定에 依拠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者.
- 라. 產業廢棄物處理業會員 : 環境保全法 第50条의 規定에 依拠 廢棄物處理業許可를 받은者.
- 마. 環境保全関聯事業會員 : 防止機器類(防止藥品包含)製造및 販売業者와 建設業조경等 其他 環境保全에 関聯된 事業体 또는 団體로서 理事會의 同意를 받은者.
- 바. 特別會員 : 本會發展에 現저한 공헌을 한 個人 또는 团體로서 理事會의 同意를 받은者.
- 사. 名譽會員 : 社會指導層 人事.

## ● 會員의 惠澤

- 가. 協会의 事業에서 얻은 調查研究 및 技術開發 結果를 利用 또는 活用할수있음.
- 나. 技術相談 提供
- 다. 海外 技術情報 提供
- 라. 技術教育 無料受講
- 마. 施工 設計, 研究調査 分析 評価 實費提供
- 바. 刊行物(環境保全協会報) 等 無料配付.

## ● 入會節次

協會 所定樣式의 入會願書를 提出하여 (入會費와 年會費를 同時納付하여야함)理事會의 同意를 받음으로서 入會됨.

## ● 會 費

區 分	入 會 費	年 會 費	區 分	入 會 費	年 會 費
專 會 員	10,000	15,000	防止施設業會員(上)	200,000	300,000
환경관리기사회원	2,000	4,500	" (下)	100,000	150,000
排出業体会員(1種)	100,000	150,000	產業廢棄物處理業會員	100,000	150,000
" (2種)	50,000	75,000	環境保全関聯事業會員	100,000	150,000
" (3種)	30,000	45,000			

## ● 入會願書 接受處

- 서울 : 本會事務局(中区小公洞111) 753-7640, 753-7669
- 京畿 : 京畿道支部事務局(水原商工会議所内) 6-1175
- 江原 : 江原道支部事務局(春川商工会議所内) 52-4321
- 忠北 : 忠北道 支部事務局(清州商工会議所内) 3-0023
- 忠南 : 忠南道 支部事務局(大田商工会議所内) 253-9826
- 慶北 : 慶北道 支部事務局(大邱商工会議所内) 776-3585
- 慶南 : 慶南道 支部事務局(馬山商工会議所内) 6-4221~5
- 全北 : 全北道 支部事務局(全州商工会議所内) 6-3011~5
- 全南 : 全南道 支部事務局(光州商工会議所内) 2-6284~7
- 釜山 : 釜山支部事務局(釜山商工会議所内) 463-7801~5
- 济州 : 济州道支部事務局(济州商工会議所内) 3-2164
- 仁川 : 仁川支部事務局(仁川商工会議所内) 75-1840

社團  
法人 環境保全協會